

학위취득유예규정

제정일자 2023.02.01
개정일자
소관부서 교무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동의과학대학교 학칙」(이하 '학칙'이라 한다) 제57조의2(학위 취득유예)에 따라 동의과학대학교 소속 학생의 학위취득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'학위취득유예'라 함은 학칙 제57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'학위취득유예자'라 함은 학위취득유예의 승인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'학위취득유예'는 동의과학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소속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유예기간) '학위취득유예'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다.

제5조(유예절차)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'학위취득유예신청서[별지 1호 서식]'를 작성해 라이프가이드교수와 학부/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부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신청자격)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- ① 학칙 제15조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
- ② 학칙 제57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

제7조(신청시기) ① 최초로 신청할 때는 2년제는 4학기, 3년제는 6학기, 4년제는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공지한 신청기간 내에 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② 2회째 신청할 때는 학위취득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 별도로 공지한 신청기간 내에 학위취득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(등록 및 학사관리) ① 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취득 유예비(일금오만원정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수강신청의 의무가 없지만, 학점취득을 위해 수

강신청(성적포기 후 재수강 불가)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, 등록금은 등록금에관한규정에 따른다. 단,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재수강을 허용한다.

③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위취득 유예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직권취소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망, 입원, 군입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'학위취득유예취소신청서[별지 2호 서식]'를 작성해 라이프가이드교수와 학부/학과장을 경유한 후 교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등록금 환불은 등록금환불 기준에 따른다.

제9조(학적) ① 1회째 학위취득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이 제7조제2항에 따른 2회째 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, 첫 번째 학위취득유예 기간만료 후 졸업으로 처리하고, 2회째 학위취득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은 두 번째 학위취득유예 기간만료 후 졸업으로 처리한다.

② 학위취득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휴학할 수 없다.

③ 학위취득유예 학생의 학적상태는 최초 학위취득유예 당시 학과 명칭을 따른다.

제10조(취소) 학위취득 유예가 허가된 학생 중 불가피한 사유로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수여일 20일 전까지 학위취득유예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.

제11조(유예자의 권리와 의무) 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 단, 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12조(기타) 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 유예 학기의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학위취득유예 신청서

담당	부장	처장

학과 (전공)	학번	
	학년	반
성명	생년월일	
연락처	보호자 연락처	

학위취득유예 신청내역

이수학기 수	총 취득학점	학점(전공 : 학점, 교양 : 학점)
학위취득 유예 사유		
졸업희망일자	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년 2월 졸업	<input type="checkbox"/> _____년 8월 졸업

[학위취득유예]

1. 학위취득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의 희망에 의해 한학기 단위(최대 2회)로 학위취득유예 가능
2. 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위취득 유예비(일금오만원정)를 납부해야 함
3. 학위취득유예 학생이 **수강을 희망(재수강 불가)할 경우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등록해야 함**
→ (예시)수업료 :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**6분의1 해당액 납부**
4. 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생은 질병 또는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수여 일 20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후 취소 불가함
※ 상기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한 학생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

[첨부서류] 성적증명서 1부.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

라이프가이드교수 : (서명)

학과장 : (서명)

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귀하

